

[일련번호 : 11]

# 양 천 구

## 주 의 요 구

**제 목**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 절차 미준수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동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△△동은 「주민등록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, 「주민등록 사무편람」(행정안전부)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법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실조사서에 의거하여 조사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,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7일 이상 공고한 후 직권으로 등록하고, 직권조치를 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,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. 이 때 최고와 공고, 직권조치 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동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권조치를 한 후 14일 이내에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결과통지와 공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다.

[표]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통지 및 공고 처리 부적정 내역

연번	대상자	직권조치일	결과통지일	공고일	부적정 내역
1		220307	220307	220307~	직권조치 후 14일 이내에 통지하고,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통지와 공고 절차를 동시에 함
2		220727	220729	220729~	직권조치 후 14일 이내에 통지하고,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통지와 공고 절차를 동시에 함
3		240614	240614	240614~	직권조치 후 14일 이내에 통지하고,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통지와 공고 절차를 동시에 함

#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# 5. 조치할 사항

△△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